[회의록]제206차 이사회 회의록 - 강원의료사협87차

1. 회의일시: 2025년 9월 25일(목) 오후 6시 30분

2. 회의장소: 무위당사람들 교육장(중앙로 83, 4층)

3. 회의참석: 이광희 이사장, 박준영 부이사장, 신승훈 전무이사, 이창호, 최효심, 정연우
염은경, 서연남 (이상 이사, 총 8명)
참관 :
불참 : 천혜란, 이윤승, 김선기, 김태성(4명)

4. 성원보고
- 이광희 이사장(이하 의장)이 성원 12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206차 정기 이사회의 개회를 오후 6시 30분에 선언하다.

5. 전차회의록
- 의장이 7월 17일(목) 제205차 이사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의견을 물은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승인하다.

6. 보고안건
- 의장이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고 별첨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안건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다.
- 신승훈 전무이사가 논의안건을 보고하다.

7. 논의안건

제1호 의안 : 2025년 7월 ~ 8월 신규 가입 조합원의 가구원 이용 승인의 건

1. 제안 배경
-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신규 가입 조합원 및 그 가족이 조합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조합 공급고 산정의 100분의 50범위를 유지함.

2. 제의관계조항
-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제58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6차 개정)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7차 개정)
5.「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7차 개정)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7차 개정)

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3. 제안 내용

- **25년 7월 신규 조합원(8명, 8명(가구원))** : 김경철(김선희, 김효원, 김하윤), 김정규, 원호남, 김명옥, 신이순, 김동규(윤아영, 김승현, 김다솜), 박화자(김형표), 김연숙(유병옥)

- **25년 8월 신규 조합원(6명, 5명(가구원))** : 단희산(김기영), 장민숙(윤영호), 임미순, 김원훈(윤병웅, 윤보나), 한승명, 정연주(조의준)

- **총 14세대(가구원 13명)** ***총조합원수 1,750명(25년 8월 말 기준)**
- 이상 조합원의 가족에 대한 조합 의료기관 이용을 승인 주문함.

-> 결정 사항 : 원안대로 승인하다.

- 추가 의견 -

□제2호 의안 : (의료진, 경영진) 2025 사이타마 연수 후 향후 추진 과제 진행의 건

1. 제안 배경

- 25년 6월 5일 ~ 8일(3박 4일 간), 조합 임직원 12명(의료진 7명, 경영진 3명, 사무국 1명, 연수 진행 1명)이 사이타마의료생협 연수를 다녀옴.
- 사이타마의료생협의 6개 기관 방문을 통해 조합이 배워야할 점과 고민해봐야할 점 등을 각자의 연수보고서에 담고 자체 연수보고회를 진행하며 이를 토대로 조합 공통의 추진 과제를 목록화하고 진행키로 함.

*강원의료복지사협 사이타마 연수 후 향후 추진 과제 내용(25년 ~ 26년 추진사항)

1. 조합 리플렛 배포
2. 소식지 제작(분기별 또는 반기별)
3. 조합원 활동공간 확보 및 활용
4. 사회적처방전 제작(금융, 일자리, 도움, 활동모임 소개, 일상생활지원 내용 등)
5. 유료봉사자 모집 및 pool 구성
6. 고령자 중심의 토탈 돌봄(의료+돌봄) 실천
7. 조합원 배가 운동(가입유도, 조합의 자본형성)
8. 돌봄 사업을 위한 법인간 MOU 및 공동법인 설립 추진
9. 지역 내 의료 장학금 조성 및 예비 의료인들의 지역실습 확대
10. 노인돌봄시설과 통합돌봄을 위한 이전 추진
11. 조합원과 함께하는 건강식사회
12. 조합원 벼룩시장
13. 건강챌린지(당뇨, 고혈압 자조모임, 만성질환 개선 모임 등)
14. 경영진단 실시(전문 회계사)
15. 조합 로고 제작(미션, 비젼 재수립)
16. (임직원 활용)조합 설명자료 제작

17. 조합 및 사업소 정기 설문조사(사업소 이용 및 조합 활동 만족도)

2. 제의관계조항
-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제안 내용
- 17가지 추진과제 확정.
- (관심)추진 과제별 임원 참여자 확정

-> 결정 사항 : 17가지 추진과제를 원안대로 승인하다.

- 추가 의견 -
1번, 2번, 15번, 16번 서연남 이사
4번 이광희 이사장, 염은경 이사, 공영훈 원장
5번, 6번, 16번 천혜란 이사
7번, 8번 박준영 부이사장
9번 염은경 이사, 공영훈 원장
10번 임원 전원
11번 김태성 이사
12번 염은경 이사, 천혜란 이사, 서연남 이사
13번 최효심 이사
17번 김선기 이사
나머지 추진 과제들도 임원들과 함께 논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함.

□제3호 의안 : 2025년 상반기 사회적성과관리보고서 평가의 건(SVI 관련)

1. 제안 배경
- 사회적가치지표 (Social Value Index, SVI)란?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 ·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의 3가지 관점에 따라 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인증 사회적기업은 의무는 아니지만 향후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지원사업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성과를 공표할 수 있는 도구로서도 의미가 있어 측정을 권장하고 있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SVI 측정과 관련하여 사회적성과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조합은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사회의 이사로 구성함.
- 이에 2025년 상반기 사회적성과관리보고서 평가를 진행코자 함.

2. 제의관계조항
-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제안 내용
- 2025 상반기 사회적성과관리보고서 평가 및 서명
 별첨1) 2025 상반기 사회적성과관리보고서

-> 결정 사항 : 사회적성과관리보고서를 평가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하다.

- 추가 의견 -

□제4호 기타 논의 안건

기타 논의 안건 :

1. 제안 배경

2. 제의관계조항
-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3. 제안 내용
-

-> 결정 사항 :

- 추가 의견 -

서 명

의장 이광희	이사 박준영
이사 염은경	이사 신승훈
이사 이창호	이사 최효심
이사 서연남	이사 정연우